



『지역 산업·중소기업의 미래지향적 육성 거점기관』

2026년 우주항공기업 기술자립 연계형 지역성장 지원사업 통합공고

(재)전남테크노파크에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우주항공산업 육성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신규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,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우주항공기업 및 우주항공분야 사업다각화 추진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.

2026년 8월 20일

(재)전남테크노파크원장

**전남테크노파크
카카오톡 채널 개설**

“지역 기술혁신과 일자리 창출의 산실”

KAKAOTALK

 플러스친구

전라남도 지역산업 육성
중소벤처 기업지원

전남테크노파크에서 제공하는
다양한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

1. 카카오톡 실행
2. Q 검색창에서 ‘전남테크노파크’ 검색
3. TP 전남테크노파크 친구추가

공고문 목차

1. 사업개요	1
2. R&D 지원분야 신청 자격 및 세부 내용	2
3. 비R&D 지원분야 신청 자격 및 세부 내용	4
4. 평가기준 및 절차	6
5. 당해연도 추진절차 및 일정	10
6. 신청방법	10
7. 지원제외 대상 및 유의사항	13

1 사업 개요

사업목적

-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우주항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분야별 유망기업 발굴·육성을 통한 사업 다각화 및 자립 기반 조성

지원내용

- **(R&D)** 우주발사체 핵심부품·위성 부품 국산화·항공 부품 기술개발에 필요한 연구 개발비 지원
- **(비R&D)** 우주항공기업 및 우주항공분야 사업다각화 추진기업 대상 맞춤형 기술사업화 패키지 지원

지원규모

- **(R&D)** 세부 과제 유형별 지원규모 및 지원금은 [표 1] 참조
 - 지원기간 : 협약체결일 ~ 2030. 12. 31. **(총 5년)**
- **(비R&D)** 8개社 내외 (1차년도 지원금 160백만원)
 - 지원기간 : 협약체결일 ~ 2026. 11. 30. **(차년도 사업은 연차별 공고 예정)**

[표 1. 내역 사업별 지원규모]

내역사업	유형	지원내용	지원규모	당해연도 지원금 (총지원금)
R&D 지원 (품목지정)	1. 세부	- 우주발사체 핵심부품 개발 * 붙임 1. RFP_1세부 참고	각 세부 컨소시엄별	535백만원 (총 2,675백만원)
	2. 세부	- 위성 부품 국산화 개발 * 붙임 1. RFP_2세부 참고		460백만원 (총 1,330백만원)
	3. 세부	- 항공 부품 기술 개발 * 붙임 1. RFP_3세부 참고		134백만원 (총 670백만원)
비R&D 지원		- 스페이스 브릿지 패키지 지원 * 붙임 1. 비R&D 지원 프로그램 참고	매년 8社 내외	기업당 최대 30백만원

* 지원규모 및 기간, 연구내용 등은 평가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
2 R&D 지원분야 신청 자격 및 세부 내용

◆ 신청 자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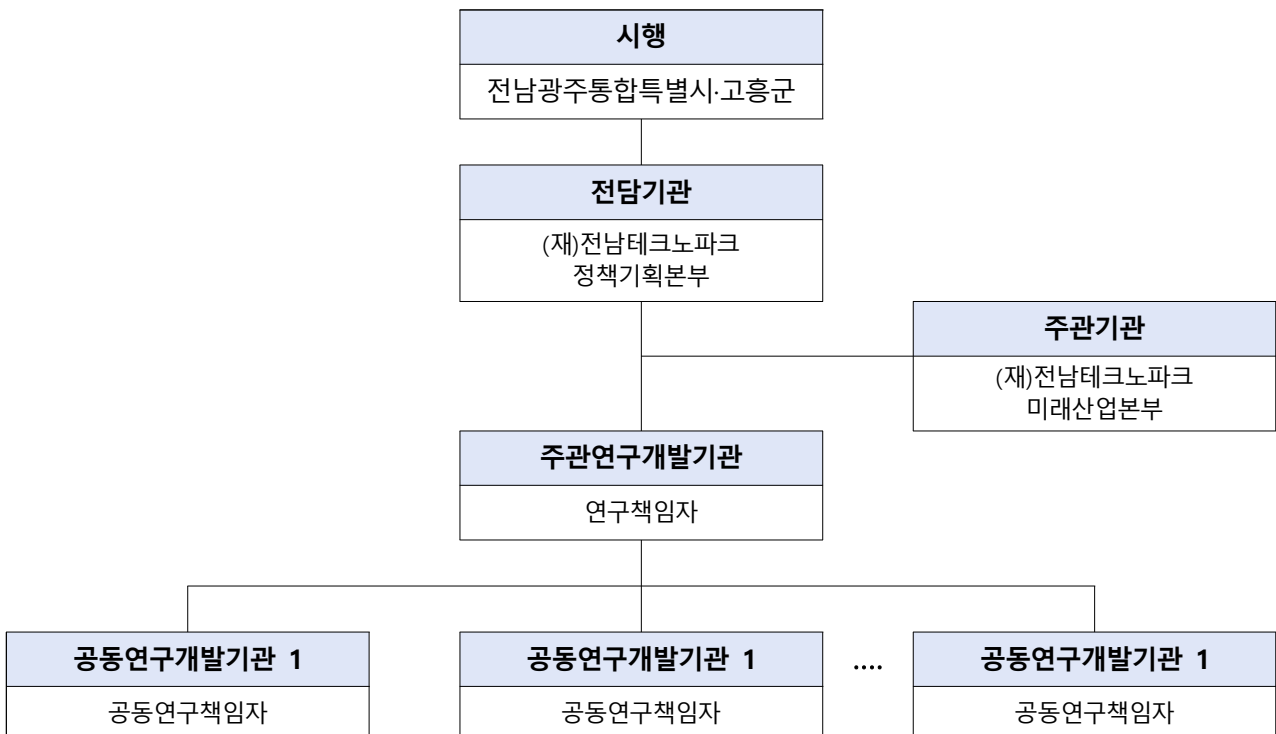
구분	주요내용
신청 자격	[주관연구개발기관] ①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또는 연구기관 ② 연구조직* 보유 중소기업 또는 연구기관 * 연구조직은 (사)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정 必 ③ 접수마감일 기준 고흥군 내 사업장*(사업자등록증, 공장, 지점, 연구소·사무소 및 시험·생산 시설)을 보유한 기업 또는 연구기관 * 협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흥군 내 사업장(사업자등록증, 공장, 지점, 연구소, 시험·생산 시설)을 보유 시 인정(기한내 미보유시 협약 취소) [공동연구개발기관] ① 우주항공 관련 기술을 보유한 기업 또는 연구기관 ※ 단, 공동연구개발기관은 협약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고흥군 내 사업장(사업자등록증, 공장, 지점, 연구소, 시험·생산 시설)을 보유 시 인정(기한내 미보유시 협약 취소)

◆ 추진체계

○ 우주항공 분야 중소기업 또는 연구기관 컨소시엄 필수

- 예시 : [연구기관(주관) + 기업(참여)], [기업(주관) + 기업(참여)], [연구기관(주관) + 기업 + 기업] 등

※ 단독 신청 불가, 1개 기업 이상 참여는 필수



- "주관연구개발기관"이라 함은 연구개발과제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주관연구개발기관(지역기업, 연구소 등)
- "공동연구개발기관"이라 함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여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(기업 포함)
- "주관연구책임자"라 함은 해당 주관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되어 연구개발과제 전체를 관리하는 연구자
- "공동연구책임자"라 함은 공동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되어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업무를 총괄하는 연구자

❖ 과제 추진 방식

- **[단계사업]** R&D과제 선정 시 해당 과제의 전체 연구개발기간에 대해 **일괄 협약을 체결**하며, 단계를 구분하여 **단계평가 및 연차별 진도(연차)점검 수행**
- * 전체 연구개발기간 5년 : 1단계(1·2·3년차) + 2단계(4·5년차) / 정산은 연차정산

❖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부담 조건

- **[기관부담연구개발비]** 연구개발기관*에서 부담하여야 할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의 **35% 이상 매칭** 필수
- * '연구개발기관'이란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
-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·현물 부담비율은 아래의 표에 따름

기관부담연구개발비 35% 중 현금비율	기관부담연구개발비 35% 중 현물비율
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의 10% 이상	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의 90% 이하

※ 예시 : 당해연도 사업비 535백만원의 35%인 187.25백만원 중 현금 18.725백만원, 현물 168.525백만원 매칭

❖ 연구개발비 산정 시 유의사항

- 연구개발비 산정기준은 「**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[별표 4] 지역사업 연구개발비 사용용도 및 세부 산정기준**」에 따라 산정
- ※ 외주 용역비는 연구개발과제의 핵심공정·기술개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며, 시제품·시작품·시험설비의 단순 가공·조립·제작, 시험·분석·검사 및 시설물(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사업 수행을 위한 시설물에 한함)의 건축 등을 연구개발기관이 아닌 제3자에게 위탁하는 용도로 산정할 수 있다. 이때, 3,000만원(부가가치세 포함) 이상 외주 용역의 경우 협약 시 또는 다음단계 연구개발기간 시작시 연구개발계획서에 해당 용역의 내역 및 금액을 명시

3 BIR&D 지원분야 신청 자격 및 세부 내용

◆ 신청자격

- (옛)전남 지역 소재 우주항공분야 관련 중소기업 및 우주항공분야 사업다각화를 추진하는 중소기업

※ 신청기업의 KSIC 코드가 왼쪽부터 넷째자리까지 일치하는 기업을 지원하되,

※ 해당 업종코드를 보유하지 않더라도 우주항공산업에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, 전남TP (또는 평가위원회)의 검토(확인)을 통해 지원 가능

구분	주요내용
신청 자격	①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(유형 1 및 유형 2 모두 해당) ② (유형 1) 기업당 최대 지원금 3,000만원 이내 - 【참고 1】 KSIC 핵심코드 에 해당하는 기업 - 접수마감일 기준 고흥군 내 사업장(사업자등록증)을 보유한 기업 또는 협약일로 부터 3개월 이내에 고흥군 내 사업장(사업자등록증)을 보유 가능한 기업(기한내 미보유시 협약 취소) ③ (유형 2) 기업당 최대 지원금 1,500만원 이내 - 【참고 1】 KSIC 연관코드 에 해당하는 기업 - 접수마감일 기준 (옛)전남 내 사업장(사업자등록증)을 보유한 기업

【참고 1】 지원 대상 분류(KSIC 코드)

그룹	번호	코드명	그룹	번호	코드명
핵심 코드	31311	유인 항공기, 항공 우주선 및 보조 장치 제조업	연관 코드	25112	구조용 금속판 제품 및 공작물 제조업
	51200	항공 화물 운송업		24121	열간 압연 및 압출 제품 제조업
	31321	항공기용 엔진 제조업		22299	그 외 기타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
	31322	항공기용 부품 제조업		29299	그 외 기타 특수 목적용 기계 제조업
연관 코드	29133	탭, 밸브 및 유사 장치 제조업		29224	금속 성형기계 제조업
	23995	탄소섬유 제조업		24191	도금, 착색 및 기타 표면 처리 강재 제조업
	70129	기타 공학 연구개발업		72129	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
	29280	산업용 로봇 제조업		20202	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
	58221	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		58222	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
	61220	무선 및 위성 통신업		63991	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 제공업
	28119	기타 전기 변환장치 제조업		26299	그 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

상세 지원 내용

○ **[중점 육성품목]** 우주항공분야(발사체, 위성, 드론, 무인기 등) 주요 육성 품목 지원

산업구분	중점 육성품목(안)
우주항공산업	① 우주발사체·위성·항공용 핵심 소재·부품 및 구조·제조 기술 개발 ② 우주항공 전자·통신, 지상 인프라 및 시험·검증·신뢰성 확보 기술 개발 ③ 기타 우주항공 분야 전·후방 연관 기술 및 품목 개발

○ **[지원내용]** 스페이스 브릿지 패키지 지원

지원대상	지원내용	지원규모	기업당 최대 지원금
★유형 1에 해당하는 기업	・ 시험·인증·성능평가, 지식재산권, 특허 ・ 사업전략 컨설팅, 신규 R&D 기획 ・ 시제품 제작, 공정개선 등 패키지 지원	8개社 내외	30백만원
★유형 2에 해당하는 기업	・ 국내외 마케팅 ※ 상세 지원 프로그램 참고		15백만원

○ **[지원방법]** 수혜기업 선정 후 직접지원(전남TP → 수혜기업)

※ 지원금 先 지급 시, 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 반드시 필요

※ 외부 회계법인을 통한 정산 실시(정산비용 기업부담금 10%에 포함 必)

○ **[사업비 구성 방법]** 유형 1 또는 2 선택 후, '상세 지원 프로그램 내용' 중 3개 이하로 조합하여 신청 ※ **단일 프로그램 신청 가능**

※ (예시/유형 1) 기술이전 1000만원, 시제품 제작 1000만원, 국내 마케팅 1000만원 총 3000만원

※ (예시/유형 2) 기술이전 1000만원, 시제품 제작 300만원, 국내 마케팅 200만원 총 1500만원

사업비 편성 예시	✓ 지원금이 20백만원인 경우 , 기업부담금은 2백만원 이상 편성 必 ✓ 기업부담금 내에 회계정산비 포함 必 ※ 회계정산비는 총사업비 기준, (10백만원 미만) 20만원 / (10백만원 이상) 25만원			
	(단위 : 천원)			
	연번	지원내용	총사업비	TP지원액
	1	시제품제작	11,000	10,000
		마케팅 지원	10,750	10,000
	2	회계정산비	250	-
	합 계		22,000	20,000
	✓ 사업비에 부가세(VAT)는 반드시 미포함 되어야함. - 사업비 22백만원(지원금 20백만원 + 기업부담금 2백만원)인 경우, 부가세(2.2백만원) 는 과제계획서 및 견적서에 미포함 ① 과제 선정될 시, 협약체결 준비서류로 이체내역증 필요 ・ 총 420만원(기업부담금 2백만원 + 부가세 2.2백만원)을 기업 과제비 통장에 입금 ② 과제 수행시 지원금과 함께 활용			

4 평가기준 및 절차

R&D지원 평가기준 및 유의사항

평가항목	세부항목	주요 평가내용
사업계획 (50)	정책부합성 (10)	○ 지원 필요성, 자생적 산업 생태계 조성 및 혁신역량 제고 가능성
	목표 및 내용 (30)	○ 품목개요서의 부합 정도, 기술개발 내용 및 목표 이해도, 사업계획의 완성도 및 실현가능성 ○ 목표의 구체성 및 정량목표 수준의 도전성, 연구방법의 창의성, 우수 지재권 창출 가능성 ○ 연구방법 내용 및 방법의 충실성, 추진전략의 적절성, 연구개발비 편성의 적정성
	사업 추진체계 (10)	○ 컨소시엄 구성과 협력내용의 적절성, 시너지 창출 가능성, 연구개발기관별 역할 분담의 명확성 ○ 주관·공동연구개발기관 구성의 적절성 ○ 연구개발기관 간 연계협력 체계 및 참여기관 간 운영의 적정성 등
추진역량 (20)	기술개발 능력, 조직역량 (20)	○ 연구책임자 전문성, 참여연구진 구성과 역량 및 역할분담, 사전 준비노력, 과거 유사 과제 수행 경험 및 성과 ○ 연구시설장비 등 연구인프라 보유 수준 및 활용계획 적절성
기대효과 (30)	일자리 창출 효과 (10)	○ 전라남도 내 직·간접적인 신규고용 창출 효과 ○ 일자리 창출 목표 설정의 타당성
	사업화 의지 및 가능성 (10)	○ 사업화 전략의 우수성, 사업화 계획의 구체성, 과거 사업화 및 기술이전 실적 적정성 ○ 매출·수출 목표 설정의 타당성, 신규시장 창출 및 수입대체 효과, 메가시티 권역 내 신규투자 및 기업 이전 등 투자유치 효과
	산업 육성 (10)	○ 성과 공유 확산 가능성, 기술개발 및 사업화에 따른 전라남도·고흥군 내 공급망 형성 및 경쟁력 제고 가능성 ○ 연구개발 성과의 지역내 재투자 가능성

-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 시 감점함
 - 최근 3년 이내에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 제3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사유로 제재처분을 받은 제재대상자(연구개발기관, 연구개발기관의 장, 연구자 등)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(3점)
 - 최근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포기한 자(연구개발기관, 연구개발기관의 장, 연구자 등)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(3점)
 - ※ 최종 점수 산출 시 상기 감점 기준에 따라 감점을 제하되, 총 5점을 초과하여 감점할 수 없음
 - 접수마감일 현재 해당 연구개발기관 또는 소속 연구책임자가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 제32조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 또는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 제32조제3항에 따른 환수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의무를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(3점)
- 선정된 과제는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이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, 과제 추진 중 규정에 따라 평가(진도점검, 단계평가, 특별평가 등)를 통해 과제가 중단되거나 사업비 조정 가능
- (연구노트) 과제수행기관 참여연구원은 연구노트를 반드시 작성
- (기술료) 기술료 비징수 과제로 지정

비R&D지원 평가기준

항 목	지 표	배 점
지원 필요성 (40)	○ 본 지원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의 명확성	20
	○ 지원대상제품의 사양, 현 진행상황, 애로사항, 시의성 등 지원의 필요성	20
지원내용의 타당성 (35)	○ 지원내용, 범위, 일정의 구체성	25
	○ 지원금액의 적정성	10
기대효과 (25)	○ 지원제품의 사업화 가능성	15
	○ 고용 및 매출 증대 가능성 및 지역 내 파급효과	10

- **[우대가점]** 평가 결과 동일점수 기업에 대한 순위 구분 시에만 적용

구분	우대가점 기준	증빙서류	가점
1	최근 3년 이내 지역특화 R&D 종료(성공*)기업 (* 최종평가 결과가 우수, 보통일 경우 성공)	최종평가확인서 (SMTECH)	1
2	「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」 제12조에 따라 인증된 원산지인증수출자인 경우	인증서 (유효기간에 한함)	1
3	지역중소기업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위기징후 단계 "주의·심각"에 소재하고 있는 위기지역중소기업	TP 확인	1

공통 유의사항

- **[부정·중복지원 제재]** 다음사항에 해당되거나, 신청·수행단계에서 부정한 방법이 확인된 경우 지원 취소 및 제재 처리되므로 유의

부정 지원	✓ 가족기업·자회사 등 특수관계 기업의 유사내용 중복 신청하는 경우
	✓ 가족기업이 지원기업과 공급기업으로 함께 신청하는 경우
	✓ 공급기업의 영업(사업계획서 대리 작성 등)에 의해 다수의 기업이 동일한 내용으로 동시 신청하는 경우
중복 지원	✓ 프로그램 및 지원 품목, 내용 등이 타 사업과 유사한 경우, 중복지원 불가 (동일제품 또는 내용으로 정부 및 지방비 지원을 받거나 진행 중인 경우) - 예시: A 지원사업과 B 지원사업의 각 동일(유사) 프로그램으로 동일 제품에 대해 중복 지원받는 경우 ✓ 타 테크노파크(광주, 전북, 대전 등)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과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으로 중복지원 현황 탐색 강화 중이므로 유의



제재 처리	✓ 신청 단계에서 확인 시: 평가 제외 ✓ 과제선정 이후 적발 시: 협약 취소 및 지원금 환수 ✓ 중복수급 등 부정행위 적발 시 지원금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✓ 향후, 지원사업 참여 제한
-------	---

🔗 선정평가 절차

- **[PMS 시스템 활용]** 전남TP 과제관리시스템(PMS)를 활용하여 신청기업의 참여제한 검토 및 선정평가 진행

- ①사업신청 → ②요건검토(TP) → ③선정평가(TP) → ④결과통보(TP) → ⑤이의신청 → ⑥협약체결

- ① **(사업신청)** PMS 회원가입 및 온라인 매뉴얼 확인하여 사업 신청

※ **PMS 온라인 매뉴얼** : <https://pms.jntp.or.kr/ko/main>

- ② **(요건검토)** 기업이 지원한 신청서 및 자격요건(첨부서류) 등 확인

※ 신청자격 및 참여제한 여부 등을 확인하여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'사전 제외'

※ 사업계획서상 우주항공분야와 관련이 없을 경우 '사전 제외'

- ③ **(선정평가)** 신청기업 대상으로 평가위원단을 구성하여 지원기업 선정

※ **평가기준** : 총 100점 만점 기준으로 산술평균* 점수 70점 이상인 기업 중 고득점 순으로 예산을 고려하여 지원대상 선정

* 종합평점 산출은 위원별 최고,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합계의 산술평균으로 계산

- ④ **(결과통보)** 선정·미선정 기업 결과 및 평가의견 통보

- ⑤ **(이의신청)** 선정평가위원회에서 선정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, 1회에 한하여 신청 가능

- ⑥ **(협약체결)** 평가결과 확정 및 수정연구개발계획서 검토 완료 이후, 연구개발·사업계획 및 지원 금액 등에 대한 PMS 전자협약체결

※ **참여 책임성 강화를 위한 중복지원 확약서 제출 필수**

🔗 최종평가

- **[R&D]** 연차별 진도(연차, 수시)점검 수행 및 1단계 사업 종료 후 단계평가, 2단계 사업 종료 후 최종평가 진행

- **[비R&D]** 과제종료와 함께 지원기업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필요시 현장실태조사 병행 및 최종 평가 실시

※ 비R&D 최종 평가 시 결과물 증빙은 **붙임 1. 비R&D 지원프로그램** 참고

- **[평가기준]** 제출자료를 기반으로 객관적 지표로 구성하여 "우수", "성공", "불성실수행", "실패"로 구분하여 평가

※ 종합평점 산출은 위원별 최고,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합계의 산술평균으로 계산

(우수: 80점 이상 / 성공: 70점 이상 / 성실수행: 60점 이상 / 실패: 60점 미만)

- **[지원금 인정]** "우수", "성공" 지원금 전액 지급 인정, "불성실수행" 지원금 일부 인정 (최종평가에서 부분 인정된 만큼), "실패" 지원금 회수

5 당해연도 추진절차 및 일정

○ (추진절차) 지원기업 선정절차 및 일정



※ 추진상황에 따라 방법/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

6 신청방법

◆ 신청기간

○ 공고 및 접수기간

- 전남테크노파크 : 2026. 8. 20.(목) ~ 9. 2.(수) 18:00

◆ 신청방법

○ 온라인 접수(해당공고 선택) → 신청서류 제출(업로드)

- (서류접수처) <https://pms.jntp.or.kr/ko/main>

※ 접수 마감 당일은 시스템 접속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, 가급적 마감일 전 신청접수 완료 요망

※ 우편, 방문, 이메일 접수는 시행하지 않음.

※ 필요시 온·오프라인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

※ 신청방법은 전남TP PMS 사이트 온라인 매뉴얼 참조

제출서류

○ R&D 지원 제출서류

구분	제출 서류명	제출 형식	서식	비고
1	연구개발계획서	HWP	서식 1-1	필수
2	사업자등록증	PDF	기업 제출 - 주관·공동연구개발기관 제출 * 필요시 종된 사업장명세(증명) 포함	필수
3	연구개발기관의 신청 자격 적정성 확인서	PDF	서식 1-3 - 주관·공동연구개발기관 제출	필수
4	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	PDF	서식 1-4 - 주관·공동연구개발기관 제출	필수
5	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서	PDF	서식 1-5 - 주관·공동연구개발기관 제출 *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자 모두	필수
6	연구윤리·청렴 및 보안서약서	PDF	서식 1-6 - 주관·공동연구개발기관 제출 *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자 모두	필수
7	중견기업 및 중소기업 확인서	PDF	기업 제출 - 중소·중견기업인 신청기관 제출	필수
8	연구개발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	PDF	기업 제출 - 주관·공동연구개발기관 제출	필수
9	최근결산 재무제표 또는 회계감사보고서	PDF	기업 제출 - 주관·공동연구개발기관 제출 * 단, 비영리기관의 경우 제출 면제, * 최근 3개년치, 국세청 발급본 원칙	필수
10	연구자의 동시수행 과제수 확약서	PDF	서식 1-10 - 주관·공동연구개발기관 제출	필수
11	감점 사항 확인서	PDF	서식 1-11	해당시
12	신규 참여연구자 채용 확인서	PDF	서식 1-12	해당시

- 관련 법규

- ※ 「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법률」 및 같은법 시행령
- ※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같은 법 시행령
- ※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
- ※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
- ※ 지역산업지원사업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
- ※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및 연구윤리·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

○ 비R&D 지원 제출서류

구분	제출 서류명	제출 형식	서식	비고
1	기업소개자료	HWP	서식 2-1	필수
2	(비R&D) 과제계획서	HWP	서식 2-2	필수
3	견적서 및 비교견적서	PDF	기업제출	필수
4	사업 관련 협약서 및 동의서 등	PDF	서식 2-4 ※ 1개의 파일로 제출 * 중복지원 금지사항 협약서 * 참여기업 자료제공 협약서 * 개인/기업 정보 수집·이용·제공·조회 동의서 * 신청자격 적정성 자가진단표	필수
5	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	PDF	기업 제출	필수
6	표준산업분류코드(KSIC) 확인가능 서류	PDF	기업 제출 * 잠재기업, 산업특화 지원 프로그램 신청기업 필수 제출 * 스타/선도기업/R&D전용 제출 불필요 * 공장등록증 또는 홈텍스 '사업자등록사항 및 담당자 상세안내' 캡처본을 PDF 변환	필수
7	최근 3년간 재무제표(23년~25년)	PDF	기업 제출	필수
8	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	PDF	기업 제출 * 사업신청시 새로 발급받아서 발급 유효기간 확보 필수	필수
9	우대사항 가점 증빙서류	PDF	기업 제출 * 우대가점표 3번은 TP에서 별도 확인	해당시

- 관련 법규

※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('23.07.17)

※ 지역산업육성 기업지원사업 관리지침('24.02.27)

7 지원제외 대상 및 유의사항

◆ 지원제외 대상

- 신청과제가 공고된 과제제안요구서의 목표 및 내용에 해당되지 않을 때에는 사전 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 가능
-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, 참여기관, 협력기관, 기업의 대표이사, 총괄책임자, 부문 책임자가 아래 기준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
 - 접수 마감일 현재 지역산업육성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경우
 - 총괄책임자 또는 주관/참여 기관장이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인 경우
 -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(보고서 제출, 정산금/환수금 납부 등)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
- 기업의 부도
-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
-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,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 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
- 파산, 회생절차,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(단,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)
- 최근년도(공고기준 전년도) 결산 재무제표 상 완전자본잠식, 부채비율 1,000%이상인 경우, 또는 감사의견이 '의견거절' 또는 '부적정' 인 경우 ※ 부채비율 = (부채총액/자기자본) x 100
다만,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지원 가능

① 창업 3년 미만의 중소기업

② 「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」에 따른 “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(채권은행 협약)”에 따라 채권 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을 체결한 중소기업

③ 아래의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, 지원기관에서 지원 가능한 것으로 인정한 기업

- 시설투자(산업기술분류 상 대분류 기준 바이오·의료분야의 과제의 경우 임상, 시험 등을 위한 투자 포함), 투자기관의 대출형 투자유치에 따른 일시적 부채 증가·자본잠식 등의 경우
- 공고 접수 마감일 직전 회계연도의 말일 기준 부채비율이 1,000% 이상이었거나 자본전액잠식 상태였으나 공고 접수마감일 기준 부채비율이 1,000% 미만이고 자본전액잠식 상태를 해소한 경우로서 당해의 수정 재무제표와 외부 회계법인의 의견서를 제출한 경우(기관 자체 가결산자료는 제외한다)

유의사항

- 과제 신청 시 또는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후 아래와 같이 확인될 경우 선정취소, 지원받은 지원금 환수 및 제재조치 가능
 - 목표 및 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제로 기 지원받은 경우
 - 과제계획서 등 신청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각종 증빙자료를 조작한 경우
 - 진도점검, 현장실태조사 및 단계/최종평가 결과 불성실과제로 분류된 경우
-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
- 신청기업의 단순포기 등으로 인한 사업중단시 차회신청에 제한됨
- 작성시 과제 내용 및 연구개발비(단위)에 대한 오기가 없도록 주의
- 필수 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사전 지원제외 처리 가능
- 연구개발계획서 내 연구책임자의 E-mail 및 휴대폰번호를 통해 평가일정 등이 안내되므로 입력된 연락처를 정확히 작성
 - ※ 잘못된 담당자, 전화번호, 이메일 등을 기재하여 발생한 평가 안내, 결과 통보 등 미수신(연락 불능)의 책임은 신청기관에 있음
- 과제종료 후 다음해부터 3년간 성과활용현황보고서를 전남테크노파크에 제출해야 함
 - ※ 정당한 사유없이 성과활용현황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, 그 결과가 극히 미흡할 경우 등 R&D사업 등 기타 기업지원사업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가 있을 수 있음
 - ※ 과제종료 후 3년 이내 성과활용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

문의처

구분		소속부서	담당자명	전화번호	이메일
사업 담당	정	우주항공산업센터	서동석 책임연구원	061-834-4712	dsseo@jntp.or.kr
	부		최우주 주임연구원	061-834-4760	woojoo@jntp.or.kr
시스템 담당		시설안전관리실	최진영 연구원	061-729-2655	jyc2204@jntp.or.kr

【붙임】

붙임	R&D 지원분야	비R&D 지원분야
1	R&D 지원분야 RFP 각 1부	비R&D 지원 프로그램
2	연구개발계획서 등 제출서류 양식	과제계획서 등 제출서류 양식
3	근거법령 및 관련규정	근거법령 및 관련규정